



##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해진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33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4. 11. 6.

발 의 자 : 조해진·박명재·이우현  
배덕광·강길부·류지영  
김을동·이만우·유승민  
조명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은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, 현재 FMS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결과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FMS의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고,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,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.

이와 같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·감독을 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, 궁극적으로는 일

- 2 -

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1조제1항, 제11조의2제2항, 제1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).

## 법률 제 호

###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실시결과의 통보”를 “진행상황 및 실시결과의 통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체 없이 그 결과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행상황 및 결과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“그 실시결과”를 “그 진행상황 및 결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기록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공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로 하여금 제6조·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6조(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)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9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그 진행상황 및 결과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) ① -----  
 -----  
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

2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, 폐쇄회로 텔레

② (생략)

비전 등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 
한 영상기록 등을 대통령령이  
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 
공개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